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2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이정문 · 전용기
박민규 · 송옥주 · 이성윤
임미애 · 서영석 · 이춘석
양부남 · 안호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될 경우, 선거인의 규모와 지역 분포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후보자 간 비교·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·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, 중앙회 등 임직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조합원 직선제 실시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·투명성 및 정책선거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(안제24조제1항 후단 신설).
- 나. 농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이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,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순회토론회 및 방송연설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30조의5 신설).
- 다. 중앙회 및 그 자회사, 회원조합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, 누구든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도록 함(안 제30조의6 신설).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제30조의4까지에”를 “제30조의5까지에”로, “한정한다”를 “한정하며, 제30조의5에 따른 방법은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에 한정한다”로 한다.

다만,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, 활동보조인의 선거운동은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범위로 한정한다.

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5(후보자의 대담·토론회)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담 또는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·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.

1. 대담: 1인의 후보자가 공약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

2. 토론회: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공약 및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·답변하는 것
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진행하여야 하며, 토론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대담 또는 토론회의 개최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앙회가 부담한다.

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·도별 선거인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지역에서 순회하는 방식의 토론회(이하 “순회토론회”라 한다)를 개최할 수 있다.

⑤ 「방송법」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·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 또는 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.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.

⑥ 대담 또는 토론회의 초청대상, 개최 횟수, 일시·장소, 진행절차,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및 녹화물의 게시,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·집행 및 정산, 제4항에 따른 순회토론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30조의6(중앙회 등 임직원의 선거관여 금지) ① 중앙회 및 그 자회사(손자회사를 포함한다), 회원조합 및 회원조합이 출자한 법인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의 임직원은 그 지

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중앙회 및 그 자회사(손자회사를 포함한다), 회원조합 및 그 자회사 등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,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·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을 초청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담 또는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·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.

1. 대담: 1인의 후보자가 공약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

2. 토론회: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공약 및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·답변하는 것

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진행하여야 하며, 토론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대담 또는 토론회의 개최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앙회가 부담한다.

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·도별 선거인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지역에서 순회하는 방식의 토론회(이하 “순회토론회”라 한다)를 개최할 수 있다.

⑤ 「방송법」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·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 또는 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.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.

⑥ 대담 또는 토론회의 초청대상, 개최 횟수, 일시·장소, 진행절차,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및 녹화물의 게시,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·집행 및 정산, 제4항에 따른 순회토론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30조의6(중앙회 등 임직원의 선거관여 금지) ① 중앙회 및 그 자회사(손자회사를 포함한다), 회원조합 및 회원조합이

출자한 법인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 누구든지 중앙회 및 그 자회사(손자회사를 포함한다), 회원조합 및 그 자회사 등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,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·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.